

1. 의결주문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298호, 2021.7.20. 공포)되었으며, 이에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임

국가교육위원회가 소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은 따라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교육부장관과 구분하여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두고 있음

이를 반영하여,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승진 임용권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두는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 규정(안 제42조)
-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8.11. ~ 2022.8.31.)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본문 중 “교육부장관이 지정한다.”를 “교육부장관(단, 국가교육위원회의 교육공무원에 관해서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이 지정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2조(명부의 작성권자) ① 명부 작성권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 제청권자중에서 <u>교육부장관이 지정 한다.</u>	제42조(명부의 작성권자) ① ----- ----- <u>교육부장관(단, 국가교육위원회의 교육공무원에 관해서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 장으로 본다)이 지정한다.</u>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	
연 락 처	(02) 2100 - 3203